

방송통신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

1. 관련

- 가.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
- 나. 방송법 제98조(자료제출)
- 다.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(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)
- 라.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(자료제출)
- 2. 방송법 제69조의2 등에 따라 「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」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제출기한 : 2023. 3. 31.(금)

나. 제출방법 : 전자우편 제출(mediadiversity@korea.kr)

다. 제출내용 : 붙임 참조

- 3. 「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(붙임1)」와 「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(붙임2)」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www.kcc.go.kr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제목 :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 제출 안내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1부.
 - 2.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 1부. 끝.



수신자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

주무관방송통신사무미디어다양성전결 2023. 2.15.허샛별관정세민정책과 과장장대호

협조자

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과-140 (2023. 2. 15.) 접수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2동 방송통신위원회 / www.kcc.go.kr

전화번호 02-2110-1464 팩스번호 02-2110-0148 / hsbyeol@korea.kr / 비공개(5)

국민이 주인인 정부